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Lowering of the Age of Juveniles

김종두* Kim, Jong-Doo¹ (kjd@seowon.ac.kr) | ORCID: 0000-0002-4480-601X

¹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t.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국문초록 / ABSTRACT

이 연구는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개인의견제시를 중심으로 하고, 소수 학생의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약한 처벌과 교화를 통한 행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에서 볼 때, 소년범죄율과 촉법소년 범죄율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령하향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로 하향 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넷째,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을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려는 착한아이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on the lowering of the juvenile age for juvenile delinquency in relation to juvenile delinquency. The research method was centered on the presentation of individual opinions and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with a small number of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had a very high tendency to support the lowering of the juvenile age. These results show the perception that the expectation of change in behavior through weak punishment and edification has already reached the limit, called juveniles under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age of Chokbeop boy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riminal act itself and develop a discussion on lowering the juvenile age. Judging from the various opinions and arguments about juvenile law enforcement, there was a very high perception that it was not appropriate to argue that lowering the age was not necessary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such as juvenile crime rate and juvenile crime rate by law. Third,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s assertion that it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lowering of the upper limit age for legal juveniles to 13 is nothing other than self-contradictory inability to read the changes of the times. Fourth, there are some experts who oppose the lowering of the age of juveniles who cannot escape from the good child syndrome to show their good heart.

주 제 어: 촉법소년, 범법소년, 청소년비행, 소년범죄, 연령하향

Key words: Chokbeop boy, Juvenile offender,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crime, Lower age

¹*Corresponding author: kjd@seow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소년범죄가 성인들과 같은 유형의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만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인범죄를 모방 삼아 아동이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율을 보면,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횡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어릴 적 무심코 행한 범죄가 낙인이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양쪽의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 시기에 있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교육은 그 성과의 정도를 떠나서 계속되어야 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한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머니투데이, 2022).[1]



[그림 1] 소년 범죄율(머니투데이)

사회의 안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범죄율이 낮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범죄후의 교정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과 가까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에 있는 입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더불어서 촉법소년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하겠다. 이러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 됨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 (법무부 2022.10.26.)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3].(법률신문, 2023.2.23.).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처벌보다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교육과 치료 필요”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국민 여론과는 입장을 표면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분석해 보고, 대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논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면담을 통한 질문으로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S 대학 사범대 교직과목 수강생 2022-2학기 4개 분반과 2023-1학기 2개 분반의 수강생 1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종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여 제출하는 기간은 1주일 이 주어졌다. 학생구성은 선택과목이므로 학년은 1-4학년이 모두 수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1-2학년이 주된 분포로 이루어졌다.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촉법소년(觸法少年): 소년법에 의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2년간 소년원에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용어
-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안 된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는 법적 규정 용어
- 형사미성년자는 14세의 소년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소년법 제2조에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5.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2학기과 2023년 1학기 충북의 S대학 교직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여 자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셋째,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제출은 1주에 걸쳐 개별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수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년범죄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범죄는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범죄란 무엇인가? 에 대한 법적 용어로서의 의미는 각종 법전과 선행연구들에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기술하고자 한다.

범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상대방에게 위협한 행위를 하도록 행위, 상대방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하는 행위는 과거에는 폭력이나 강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성인들과 동일한 범죄인 성 착취, 성매매, 당연하게 저지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학생들의 과격한 범죄가 나타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져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들과 같거나 더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리하듯이 가해자의 형량이 약하다 보니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성폭행, 성매매, 사기, 절도 등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들은 큰 피해가 없으나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에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찬성입장에서는 청소년 사고방식과 체격이 달라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입장에서는 기존 제도 재정비가 우선이며, 연령하향은 나중의 일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4]. [사진 1] 참조.

축법소년 연령하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전문가 또한 개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인가 부정적 영향인가에 의해 규정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삶이다. 개인의 불안문제는 개인으로 한정되지만, 공동체의 불안은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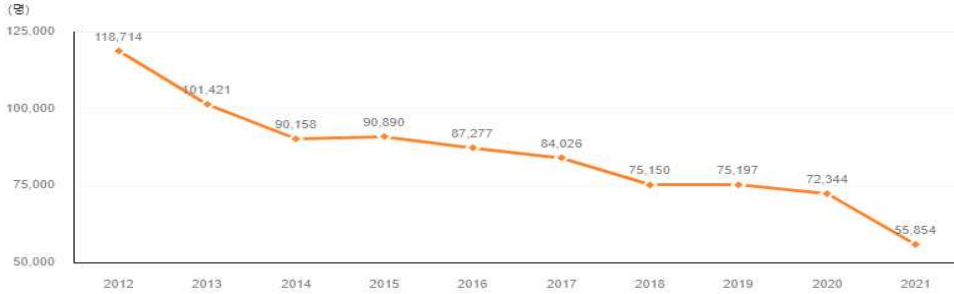
[사진 1] 축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전문가 의견 출처: 조선일보 2022년 8월 4일자 사회면

과거부터 소년범죄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들의 범죄를 모방하는 흉포화 된다는 점이다[5][6][7]. 이러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축법소년 범죄에 대해 연령하향과 더불어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일한 결과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축법소년은 경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훈방조치 되지만 중범죄의 경우는 보호관찰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곳에서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경향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보호관찰소를 다녀온 청소년이 교화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보호관찰소에서 교화를 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소년교도소를 다녀온 청소년들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범죄의 악순환을 가져와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므로 청소년 시기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교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축법소년의 연령하향과 형량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축법소년으로 인해 얻은 피해자는 어쩌면 영원히 그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산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량을 강화하여 아주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연령 또한 낮추거나 아예 없애도록 하여 범죄에 대한 대가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의 형량이 가벼우므로 인해 반복적인 범죄를 행하게 되고, 이를 악용하여 흉포화 되고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 타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년범죄 현황

최근 10년간의 소년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그래프 1]과 같다. 소년범죄는 만19세 미만인자들의 범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축법소년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인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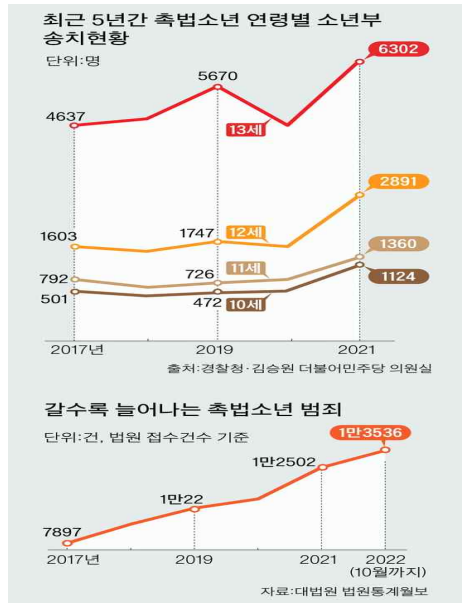


[그래프 1] 소년범죄 처리 현황(출처: e-나라지표)[8]

위의 [그래프 1]에서 보면, 전체 소년범죄는 조금씩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소년범죄는 대부분 절도, 싸움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성폭행 등으로 죄질이 지극히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속화되면서 소년들이 성인범죄를 모방하여 행하는 것들이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축법소년 범죄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2] 참조.

청소년 범죄 성향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성매매 포주역할 등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축법소년 연령을 넘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의 경우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어리고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했다고 칼부림한 학생도, 동갑 여학생을 협박해 30차례 성매매 시킨 학생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9]. (동아경제, 2022). 따



[그래프 2] 축법소년 범죄율(5년)
출처: 중앙SUNDAY(2022.11.26)

라서 비록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는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Ⅲ. 선행연구의 흐름

청소년 범죄 성향이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과거부터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이들 연구들을 몇 가지 주제별로 묶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연구에서 촉법소년 주제어 검색(2023년 7월)을 통해 나타난 전체 59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들은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연령 하향 영역이다. 둘째, 제도 영역이다. 셋째, 교육 영역이다. 넷째, 범죄 영역이다. 다섯째, 외국 사례 영역이다. 이들 연구는 논문의 연구제목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참고문헌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먼저 연령을 기준으로 진행된 연구는 전체 13편으로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영역 연령

저자명(연도)	제목
한숙희(2008)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이택인(2012)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최영훈, 하영채(2021)	형사미성년자 상한연령 하향에 관한 이론 모형 :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문희태, 류병관(2017)	소년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 최근 일본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박영규(2015)	소년법상의 소년연령에 관한 고찰
정신교, 차시환(2014)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박지혜, 이수정(2022)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박영규(2016)	소년의 형사연령에 관한 고찰
김두상, 박상식(2016)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점승현(2022)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원혜욱(2022)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동입(2022)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한민경(2022)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인식에의 영향요인-소년사범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체 4편으로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연구영역 교육

저자명(연도)	제목
김육진(2013)	질적 연구에 의한 학교상담: 구조해석학을 적용한 사례연구
류창현(2009)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과 분노감소를 위한 웃음치료와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비교
김봉수, 추봉조(2021)	경찰의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입(2015)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다음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체 24편으로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연구영역 제도

저자명(연도)	제목
박상완(2022)	드라마 <소년심판>에 나타난 치료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준일(2022)	헌법합치적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구상
현소혜(2016)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
김강현(2022)	교화와 처벌의 정책 딜레마 : 촉법소년제도의 분석
김 혁(2010)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박찬걸(2020)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재계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김 혁(2019)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호노(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박영규(2014)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에 관한 연구
박광현(2016)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근(2008)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김두상(2017)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손동권(2014)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특수처우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천정환(2016)	소년법 제4조 등에 규정된 법원 통고 제도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김봉수, 강동욱(2014)	소년법의 사회내 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홍성삼(2020)	소년법 폐지론 문제점과 대안 연구
심명섭(2020)	경찰 단계 소년사건에 대한 선도조건부 훈방의 법제화 방안
정희철(2016)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하권삼, 양문승(2018)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철웅(2022)	국권사상의 변화와 소년법 보호처분절차의 개선방향
김두상(2023)	소년법성 소년보호 이념과 우범소년
김봉수, 유영재(2022)	소년사법 중간처우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혜지, 이수정(2022)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인식과 직무만족도를 통한 SPO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손현중, 성진기(2023)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다음으로 촉법소년의 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체 13편으로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연구영역 범죄와 학교폭력

저자명(연도)	제목
김봉수(2013)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윤동호(2018)	촉법소년의 과실치상과 학교폭력: 법치(法治)인가, 인치(人治)인가
김 혁(2016)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진, 우창흠(2022)	집단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일탈적 생활양식과 학교폭력 경험 연구
박송희, 진혜경(2021)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
박상식(2017)	소년법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이은주, 이수정, 류민지(2022)	한국판 아동-청소년 정서 행동 적응 검사(K-EBA) 개발을 위한 리뷰 연구
박상진(2022)	집단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일탈적 생활양식과 학교폭력 경험 연구
이수정,이정원(2022).	소년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부정적 어휘와 통계자료 제시 여부가 일반인의 소년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유은영, 김소정(2022)	소년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고기복(2022)	청소년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영숙(2022)	지역사회 무질서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박여주(2022)	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 경험과 박복 범죄 피해/가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다룬 연구는 전체 5편으로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연구영역 외국사례

저자명(연도)	제목
师晓东(Shi Xiaodong), 郝冠揆(Hao Guankui)(2019)	中国触法未成年人处遇的文本解读与制度完善—以《刑法》第17条第4款为中心-
이인영(2015)	청소년 뇌과학 연구가 미국의 소년사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이재광, 이상원 (2019)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제도에 관한 연구
곽병선(2010)	중국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현황
홍태석(2023)	엄벌화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개정 소년법: 그 주요내용과 우리의 개정방향

이들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본다면, 소년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대두 되었으나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측면의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에게서도 이전부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IV. 연구의 결과

1.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을 주제로 1주 전에 토의과제로 제시하고, 사전조사를 하여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토론폰방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의견 제출기간(7일)을 제공하고, 그 후 수업시간에 4-5명으로 구성된 조별토의를 20분간 진행하고, 조장이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동일 내용은 반복해서 기술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주관적 의사표현을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생들의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인식

구분	찬성	반대
연령하향에 대한 이유와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 규정 제9조는 70년간 개정 안됨 • 범죄에 맞는 처벌 필요 • 청소년들의 악용이 많음 • 재범율의 증가와 불확실한 교화 • 청소년들의 지능적인 범죄 증가 • 피해자는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나요? • 소년들의 중범죄율이 높아 피해자 중심 사고가 필요함 • 촉법소년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므로 폐지가 타당함 • 피해자를 생각해서 재범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 처벌보다는 교화로 해결 • 추후 사회적응의 문제로 범죄자로 빠질 가능성이 높음 • 형사처벌이 아닌 일반처벌로 징벌적 요소 있음 • 뇌과학적으로 볼 때, 범죄를 저지를 상태(중2병) • 처벌수위를 높여도 성인범죄는 증가하며, 그렇다면 노년범죄가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음 • 낙인효과로 사회적응이 어려움 • 소년법의 목적은 교육을 통한 선도이며, 처벌이 아님 • 교정/교화시설에서 오히려 범죄 학습하게 됨

	<p>처벌강화와 연령 낮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법소년의 범죄건수는 계속 증가함 •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에 대한 분위기 형성 •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청소년 보호관찰자의 제법률이 성인보호관찰자의 제법률보다 훨씬 높음 • 촉법소년의 범죄로 무고한 희생자 증가 • 촉법소년의 범죄홍포화와 악용사례 증가 • 소년이라도 범죄 그 자체는 용서하면 안됨 • 법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증가 • 만12세면 도덕성과 인성의 두뇌는 100% 완성됨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에서 보호의 의미를 저버리는 행위 • 피해자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데 대한 경각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을 가진 범죄로서 보호처분이 효과적임 • 연령하향이 범죄의 흉포화를 막을 수 있다는 확인이 없음 • 최근의 SNS가 상용화되어 있어 지능화되고 있음 • 청소년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연령을 16-14세로 낮추고 징역 상한선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으나 소년범죄는 증가함 • 가벼운 처벌과 훈계만이 교화 가능함 • 사회적 포용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
인원 수 (2022-2)	<p>//// // // /</p> <p>//// // // // //</p> <p>//// // // // //</p> <p>//// // // // //</p>	<p>//// //</p> <p>////</p> <p>////</p> <p>//// //</p>
2023-1	<p>//// // // // //</p> <p>//// // // // /</p>	<p>/</p> <p>//// //</p>
사례수 (비율)	128(78.5%)	35(21.5%)

전체 163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찬성 78.5%, 반대 21.4%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범죄 행위가 대학생들이 보았을 때에도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의 주장들

소수의 의견이지만, 개인의 주장들 중에서 특징적인 내용들을 일부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촉법소년의 형량에 대해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범죄는 그 자체로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라고 범죄를 처벌을 안 하게 되니까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은 정당하게 생활하는 일들이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촉법소년은 실형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중학생 시기에 왕따를 경험한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도 중학교 때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다. 교화와 선도를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경우를 당하였어도 그런 주장을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3. 면담 진행 절차

토론이 끝난 후 이 연구를 위해 5명의 학생들을 섭외하여 연구의 보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2-2학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 5명이었다. 면담을 위에서 했던 질문과 동일하게 한 가지로 이루어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답변하도록 하였다.

4. 면담 결과

학생들과 면담한 결과를 연구자가 정리하여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한 개인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 시간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중복되는 의견이나 내용도 반복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연구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A: 저는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용어를 없애고 범법소년만 두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 뺨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학생을 성매매 시키는 사례도 토론할 때 들었는데, 그것도 같은 여학생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즘은 중학생들이 너무 나쁜 짓을 심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데, 소수의 학생들이 친구를 괴롭히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학생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법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소년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학생은 법 적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차라리 소년법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B: 매년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경제 성장에 따라, 미국은 만7세, 영국은 만10세, 캐나다는 만12세에 형사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로 인정되어 그냥 넘어 가게 되면, 재범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 사회현상에 맞게 강력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 수준이 한살 차이지만 도덕성과 인성과 두뇌는 통계학적 그래프로 보면 만12세 이면 100% 완성된 상태여서, 1살(만13세, 만14세) 차이로 범죄를 저지를 판단은 그전부터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을 2살 정도 낮추어서 12세 정도로 하얏으면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을 보면, 중학생들이 대부분이니 초등학생 5-6학년 시기에 뭘 모르고 나쁜 짓을 한 행위에 대해서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어요.

학생 C: 소년범죄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늘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범죄를 줄인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엄벌주의로 나아가고 있는데, 엄벌주의로 가는 것보다 교화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성인이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D: 촉법소년 처리 건수가 법원통계월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촉

법소년의 접수 건수, 처리 건수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생 인구에 비해 오히려 촉법소년 접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촉법소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소년법 개정에 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1%가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12.9%가 현행 유지, 모름 3.5%로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미성년 범죄 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해당 법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보복적으로 피해자를 왕따 시키는 학교폭력, 성폭행, 절도, 음주운전, 살인 등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나는 단순히 호기심과 무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을 없애 범죄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E: 청소년의 시기는 처벌보단 교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즘 중2병이 중학생 2학년 또래들을 부르는 특정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중2병이 나온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자면 뇌의 전두엽이 아직 완벽히 발달하지 않아서 편집기능의 작동이 미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나 위협에 해마와 편도체가 더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과된 행동이 아니라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특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더라도 성인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수위가 성인보다 훨씬 낮은 소년범죄가 처벌 연령을 내린다고 해서 예방이 될지는 실제로 미지수입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촉법소년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10].(김봉수, 2013) 대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78.5%의 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리얼리서치 조사(2022년 6월)의 80.2%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1]. 중앙일보, 2022.11.26].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마스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촉법소년의 범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남선모(2019)[12]의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민사책임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나 14세 미만인 경우 선진국의 연령 기준에 맞추어 13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마스크의 영향도 있겠으나 사회적 인식이 어린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성인범죄의

모방으로 인해 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승헌[13]의 연구에서 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셋째, 촉법소년 주제어 검색을 통한 연구를 보면,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2022년의 연구가 19편으로 전체 59편중에서 32.2%를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도 사회적 인식에 따라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동들은 욕구에 대한 인내심이나 자기 통제력이 약한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부모님과과의 생활보다는 학원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현실에서 부모와의 생활을 통한 가정교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인 것이다. 그에 비해 자녀들이 쉽게 나쁜 환경으로 빠져들 수 있는 정보습득의 기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해 매우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나쁜 행위인줄 알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간다는 점이다.

다섯째,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지 않는다는 주장이 자신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물며 연령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범유행정처의 주장[3][14]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호처분을 통한 교육과 치료가 있어 왔음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촉법소년의 범죄를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을 다루는 최고의 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성과 없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2. 결론

이 연구는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개인의견제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약한 처벌과 교화를 통한 행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점승헌[13]은 촉법

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댐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에서 볼 때, 소년범죄율과 촉법소년 범죄율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령하향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린여성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를 착취하는 것이 성인이 하면 죄가 되고, 촉법소년이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범죄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 되므로 논의의 초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초점은 연령 고하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보고, 범죄는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로 하향 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14]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흥포화 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연령을 그대로 둔다고 해결이 되는가? 무엇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대안이 없이 보호처분이나 교육,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방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을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려는 착한아이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다. 이러한 입장의 주장에는 보호처분의 실질화와 사회적 복지적 개입이 형벌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며,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소년원 송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1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보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며, 사회적, 복지적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지속해서 양산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차단하지 못하고 복지와 사회적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행위는 선한 말로 국가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신의 선함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행위일 뿐 책임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머니투데이(2022). 촉법소년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강력범죄 줄이려 연령하향 결단, 10월 26일자.
[2]	법무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 ‘소년법’ · ‘형법’ 개정 추진, 10.26일자. 법무부 <www.korea.kr>
[3]	법률신문(2023). 법원행정처,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 반대. 2월 23일자.
[4]	조선일보(2022). ‘촉법소년 연령하향’ 전문가 의견 팽팽… “시대 반영” vs “제도개선부터”. 8월 4일자. 사회면.
[5]	경기일보(2022). 끔찍한 범죄에도 “난 촉법소년” … 도 넘은 아이들. 12월 27일자.
[6]	한국일보(2021). 친할머니 찌르고, 낯선 여성 때린 10대들…‘촉법소년’ 그대로 뒤야하나. 9월 1일자, 사회면.
[7]	중앙일보(2021).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 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1월 24일자, 사회일반.
[8]	e-나라지표_소년범죄
[9]	동아경제(2022). 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8월 22일자. 사회면.
[10]	김봉수(2013).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법학논총, Vol.33, No.1, pp.173-197.
[11]	중앙일보(2022).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11월 26일자. 중앙Sunsay 심층기획.
[12]	남선모(2019).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 인식에 따른 실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7, No.1, pp.32-52.
[13]	점승현(2022).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법이론실무연구, Vol.10, No.3, pp.345-367.
[14]	중앙일보(2023), 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13세 형사책임능력 못 갖췄다” 4월 12일자.
[15]	NEWS H(202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11월 17일자.